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7월 26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④>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1)(2)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준법 분야에서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중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제2조, 7조, 8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기관(국회 포함)은 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움직임이 있지만 완전히 제정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반면, 국회 외에 행정부, 지방의회 의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와 지방의회의 공무원행동강령은 국회의원윤리강령('91년 제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93년 제정)보다 내용이 구체적이며 보다 구속력이 강하다(【표 1】 참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806개의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3조의 2)도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표 1】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 (품위유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3조 (청렴의무)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조 (직권남용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5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6조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 (사례금)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8조 (겸직금지 등)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본 시리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그 실상과 혁파방안」을 시리즈로 재구성하였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9조 (겸직신고) 제10조 (회피의무) 제11조 (재산신고)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3조 (국외활동) 제14조 (회의출석) 제15조 (보조직원관리)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제17조(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제18조(성희롱 금지)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퇴임하면 전관예우를 받는다. 국회의원도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공직자윤리법(17조, 3조)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취업제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2016.7.21) 퇴직한 국회의원이 취업제한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 이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18조(시행령 31~34조)에 의해 일정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하기 전 5년간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협회, 법무법인 등 포함)에 취업이 제한된다(【표 2】 참고).

【표 2】 퇴임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공직자윤리법 3조 1항)

- 정무직공무원(국무위원, 대통령, 총리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의 정무직공무원(의원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일부 외무공무원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대령 이상의 장교와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총장·대학원장·학장
- 4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 공기업 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 이밖에 4급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감사원·국세청·관세청 공무원 중 7급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7급 이상 공무원, 검찰 사무직 및 마약수사직의 7급 이상 등도 취업제한을 받음(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공직자윤리법 18조의 2에 의해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판사 및 검사의 경우, 변호사법 31조 3항에 의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한다(【표 3】 참고).

【표 3】 퇴직공직자와 판검사의 업무와 취업제한 내용

구분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제한 (공직자윤리법)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제한 (변호사법)
업무 제한	재산공개의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업 금지	판사, 검사는 퇴직 1년 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은 영구적으로 취업 금지	판·검사가 재직 중 직접 담당했던 사건은 영구적으로 수임 금지
업무제한의 실효성 확보	재산공개의무자는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판, 검사 등은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연 2회)
	로펌 취업 공직자는 업무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연 1회) 「변호사법」	
취업제한	대형로펌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현행: 자본금 50억 원 이상과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	취업은 허용되나, 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법무법인 취업이나 개업 제한 효과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도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18조의 4에 의해 공직퇴직자는 본인 및 제3자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의회 선진국은 의원의 퇴직 후 취업(post tenure employment)을 제한하거나 취업내용을 신고(report)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⑤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선거 분야